

2019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 연구 -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 중심 -
발주기관	통 계 청

2019년 2월

	관련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담 당	통계기준과	최경순 사무관	042-481-2566	042-481-2180
		양동혁 주무관	042-481-2529	

목 차

I . 일반사항	1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1
3. 사업 목적	2
4. 과제 관리 및 평가	2
II . 제안요청 사항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내용	9
3. 기타 수행 사항	9
4. 주요 산출물	10
5. 추진 일정(안)	11
III . 기타 행정사항	12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12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4
3. 기타 세부 사항	16

[서식]

1. 제안서 평가기준	19
2. 과제제안서 표시서식 및 작성방법 요약	20
3. 과제수행계획서 서식	25

I. 일반 사항

1. 사업 개요

- (과제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 연구
 -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 중심 -
- (기간) 계약체결일 ~ 10.31. (약 7개월)
- (예산)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연구범위, 내용, 산출물 등을 정하고 전문기관(가)을 선정하여 연구를 위탁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는 연구용역 방식
 - 통계목적 분류에 대한 이해와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분류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
- (결과활용) 국제범죄분류 대분류별 국내 죄명과의 연계 및 시산을 통한 한국범죄분류 체계 구성방안 심층 연구
 - 유형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범죄분류(KCCS) 초안 도출

2. 추진 배경

- 국제기구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채택('15.3.)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3. 사업 목적

-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4. 과제 관리 및 평가

1) 과제담당관 지정

- 정책연구과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 및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관장

2) 과제 점검 및 평가

-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후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 협의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
-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 이상 공동 평가
 -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자에게 15일 범위에서 보완 요구
 -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 불이익 부과

II. 제안 요청 사항

1. 연구 범위

- 국제범죄분류(ICCSC)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에 대한 한국형 분류체계 도출

< 2019년도 연구 대상 분류 >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3개		세분류: 172개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20112	경미한 폭행		
				02012	협박	020121	중대한 협박		
				020122	경미한 협박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020190	기타 폭행 및 협박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020213	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020213	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2	자유 박탈	020221	납치	020221	납치
						020222	불법 감금	020222	불법 감금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재킹)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재킹)
						020229	기타 자유 박탈	020229	기타 자유 박탈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1	불법 입양	020291	불법 입양
						020292	강제 혼인	020292	강제 혼인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1	노예	020310	노예	020310	노예
								020321	강제 가사 노동
				02032	강제 노동	020322	강제 산업 노동	020322	강제 산업 노동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329	기타 강제 노동					020329	기타 강제 노동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10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20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30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3개		세분류: 172개							
03	성 범죄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0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5	강요	02051	강탈 또는 갈취	020510	강탈 또는 갈취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590	기타 강요 행위				
				0206	과실	02061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	020611	아동 과실	020611	아동 과실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02062	직무상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020630	차량 운전 부주의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690	기타 과실 행위				
				0207	위험행위	02071	건강 위협 행위	020710	건강 위협 행위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21	음주 운전	020721	음주 운전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9	기타 위험 행위	020790	기타 위험 행위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1	괴롭힘	020811	직장내 괴롭힘	020811	직장내 괴롭힘		
								020819	기타 괴롭힘	020819	기타 괴롭힘		
						02082	스토킹	020820	스토킹				
				0209	명예훼손, 모욕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10	개인의 특성 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20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10	차별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0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0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101	개인 차별	021010	개인 차별		
								02102	집단 차별	021020	집단 차별		
				0211	인적 침해	02109	기타 차별	021090	기타 차별	021090	기타 차별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02119	기타 침해	021190	기타 침해		
				0219	기타	02190	기타	021900	기타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1	유형력 강간	030111	유형력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30113	의제 강간	030113	의제 강간										
030119	기타 강간	030119	기타 강간										
03012	성폭행	030121	신체적 성폭행					030121	신체적 성폭행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				
03019	기타 성폭력	030190	기타 성폭력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0	성인 성착취				
		03022	아동 성착취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3개		세분류: 172개	
						030222	아동 성매매
						030223	성적 목적 아동 유인
						030229	기타 아동 성착취
				03029	기타 성착취	030290	기타 성착취
		0309	기타 성 범죄	03090	기타 성 범죄	030900	기타 성 범죄
04	폭력은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04011	대인 강도	040111	공공 장소 대인 강도
						040112	사적 장소 대인 강도
						040119	기타 대인 강도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040131	금융 기관 강도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04014	가축 강도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90	기타 강도 행위
				0409	기타	040900	기타
05	재산만 침해	0501	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050110	사업장 침입절도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30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9	기타 침입절도	050190	기타 침입절도
		0502	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1	육상 차량 절도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050229	기타 개인재산 절도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31	상점 절도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40	공공재산 절도		
		05025	가축 절도	050250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60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290	기타 절도 행위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0	지적재산권 위반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2	사유재물 손괴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3개		세분류: 172개			
				05043	회사재물 손괴	050430	회사재물 손괴		
				05049	기타 재물 손괴	050490	기타 재물 손괴		
		0509	기타	05090	기타	050900	기타		
06	관리대 상 약물 이 나 정신 물 질 관 련 위 법 행 위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06012	비개인소비용불법 마약류밀매,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물 전환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190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90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9	기타	06090	기타	060900	기타		
		09	공공안 전, 국가보 안 위반 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1	화기 불법 소지, 사용
								090112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0901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0901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소지, 사용 관련 행위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3개		세분류: 172개			
				09012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1	화기 밀매		
				090122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밀매		
				09012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관련 행위	090190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210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0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10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조작		
				090322	컴퓨터 데이터 불법 조작	090330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3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90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9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40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510	범죄 조직 가담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1	범죄 조직 가담	090590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9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610	테러조직 가담		
		0906	테러	09061	테러조직 가담	090620	테러 재정지원		
				09062	테러 재정지원	090590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59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700	비상해 교통위반		
		0907	비상해 교통위반	09070	비상해 교통위반	090900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0909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09090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1	환경 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1	대기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10	대기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2	수질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20	수질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3	토양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30	토양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9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 행위					100210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	쓰레기 이동·투하 관련 행위			10021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20	해외폐기물이동·투하		
				10022	해외폐기물이동·투하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3개		세분류: 172개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0031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거래 또는 소유	100311	희귀종 국내 거래 또는 소유		
						100312	희귀종해외밀매		
				10032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20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9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390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	불법 벌목	100410	불법 벌목		
				10042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20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3	불법 채굴	100430	불법 채굴		
				10049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490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1	동물 위해 행동	100910	동물 위해 행동		
				1009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90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1	기타 범죄	1101	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	11011	고문	110110	고문
						11012	해적	110120	해적
						11013	전쟁범죄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상,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110139	기타 전쟁범죄								
11014	집단학살					110140	집단학살		
11015	반인권 범죄					110150	반인권 범죄		
11016	침략 범죄					110160	침략 범죄		
11019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190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1	비행	110210	비행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90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2. 연구 내용

- 위의 연구대상 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표 확정
-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 방안 및 분류체계(안) 도출
 - 현 범죄통계 작성 대상 죄명(코드)과 검·경 통계분류와의 연계표 및 국제범죄분류 세분류와의 연계표 작성 (연계표는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제공)
 - 연계표에 기반한 **범죄통계를 시산**하고, 시산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예상되는 사회적 쟁점 등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제시** (시산결과표는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제공)
 - 시산·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 체계(안) 도출**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작성
 - 도출된 분류체계의 각 분류별 해설, 용어정의, 포함·제외 사례, 유의사상 등 상세정보 수록
-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3. 기타 수행 사항

- **(진행상황 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연구 진행 경과보고와 방향 설정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
 - 연구진 전원은 모든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연구 중 발생하는 쟁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지침 등을 공유
 - 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월에는 진행상황 점검회의 생략 가능

- (보고서 보완) 최종보고서(안)에 평가결과 및 발주처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
- (연구결과 발표) 연구진은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토론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최되는 범죄분류 세미나에 세션을 구성하고 연구결과를 발표

4. 주요 산출물

- 모든 보고서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명료하게 기술
- 구체적 제출 일정, 수량, 양식 등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산출물	수록내용	수량(방법)	제출시기
과제수행계획서	- 계약내용에 근거한 연구 계획	1부(e-mail)	계약 후 1주 내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과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과제수행 계획서 수정	각1부(e-mail)	착수보고 후 1주 내
중간보고서	- 착수보고 이후 진행된 연구내용	1부(e-mail)+ 10부(인쇄물)	계약 후 2개월 내
최종보고서(안)	- 연구 결과보고서 초안	1부(e-mail)	계약만료 2개월 전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평가 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1부(e-mail)+ 20부(책자)	계약만료 2주 전
기타 산출물	- 연계표, 통계표, 분석자료 및 수집자료 일체	1부(e-mail)	계약만료 후 2주 내

5. 추진 일정(안) * 연구수행 일정은 계약일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10.31. (약 7개월)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수행(약7개월)													
- 과제수행계획서(계약후 1주내)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평가)회													
- 최종보고서(안) 접수(만료 2개월전)													
- 최종보고(평가)회													
- 최종보고서 접수(만료 2주전)													
- 진행상황 점검회의													
• 사후 보완													
- 보고서 검토·보완													
- 범죠편류 세미나 개최													

Ⅲ. 기타 행정사항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 및 공개경쟁에 의해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제안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 불가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기준’ 적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가격 종합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결과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평가절차
 - 제안자의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자 점수 계산

다. 기술평가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서식 1] 참조

라. 평가점수 산출방법

- 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
 - (각 평가위원의 점수산출)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 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합산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총 80점의 85%)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평가 실시
- 배점 : 20점
- 평가근거 및 평점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가. 제안서의 작성방법

- 제안자는 통계청이 제시한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여 『통계청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양식[서식 2]』에 따라 연구 방법 및 과제 수행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제안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
- 제안서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학력, 경력, 연구논문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나.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일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제본하여 제출함

다. 제안 설명회

-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통보
- 참여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 : 40분 이내
 -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 및 답변 20분
- 설명회에 불참 시 제출한 제안서 만으로 서면 평가 실시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혹은 설명회에서 추가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 설명회 관련 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함

라.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기타 세부사항

가. 보고 사항

- 연구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역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구분	보고 내용	시기	방법
착수보고회 개최	- 과제수행계획서 (서식3)	계약 후 1주 내	대면보고
중간보고회 개최	- 연구결과 중간보고서	계약 후 2개월 내	대면보고
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결과 최종보고서(안)	계약완료 2개월 전	대면보고
진행상황점검회의 개최	- 진행상황 보고	매월(착수, 중간, 최종 보고 실시 월 제외)	대면보고

나. 비밀 및 보안

- 연구용역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용역기관의 용역수행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 사업 수행 지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조사 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편집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함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세미나, 학회 등에 연구자 단독 또는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행정자치부 정책연구용역 국민 집단지성 활용방안에 따라 국민생각함* 등의 사이트에 일반 국민이 등록한 아이디어를 조회·검토·선별하고, 분석·발전시켜 연구 수행에 반영하고, 산출내역서에 마련된 항목에 근거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
 - *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rk>) > 생각함 특별관 >정책연구
 - ** 대가 지급기준은 계약예규(기재부)에 따라 자문료, 평가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고려하고 연구용역 규모·내용·반영비율 따라 자체적으로 책정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은 공동으로 소유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국가연구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서식 1>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대상 연구기관 : _____

대항목 (배점 한도)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일반사항	과제 이해도	◦ 과제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5	
	제안기관 수행능력	◦ 과제수행관련 기술보유 수준 ◦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 ◦ 제안 연구기관의 사업 분야와 본 과제의 관련성 정도 등	15	
연구방향 및 내용	연구방향	◦ 과제 해결방향의 적정성	10	
	연구내용	◦ 연구방향에 따른 해결 방안 및 내용의 적합성 ◦ 제안요청사항의 요구 충족도 ◦ 연구방향에 따른 해결 방법론의 적합성 ◦ 적용이론의 적정성 ◦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등	30	
	수행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연구조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원 업무분장의 적정성	25	
	일정관리의 적정성	◦ 과제수행절차의 적정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등	5	
기타사항	기타사항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보안관리, 기밀보장에 대한 확신성 등	5	
추가제안	추가제안사항	◦ 연구 추진 시에 반영함으로써 과제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제안	5	
합 계			100	

2019년 월 일

(평가) 평가위원 : _____ (서명)

(확인) 위 원 장 : _____ (서명)

<서식 2>

과제제안서 표시서식 및 작성방법 요약

※접수번호			※관리번호	
-------	--	--	-------	--

2019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통계청장 귀 하

I. 과제 개요 (작성요령은 “㉠”로 된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추진배경(또는 필요성)

- ㉠ 연구배경 또는 필요성 기술
-

2. 연구범위

- ㉠ 본 연구에서 다룰 주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II. 제안 연구기관 현황

1. 일반현황

-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개인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2. 주요 연구분야

- ㉠ 제안기관의 주요연구분야(개인의 경우 전공 및 연구분야)를 기술한다.

III. 제안 내용

1. 제안개요

- ㉠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해당과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연구방향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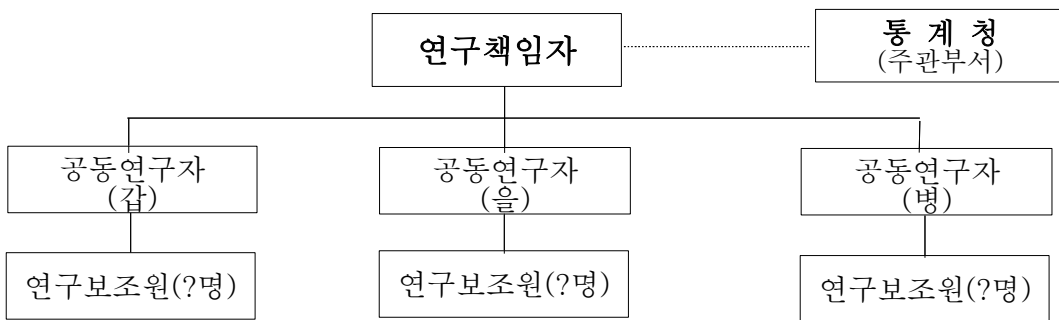
- ㉠ 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내용 등을 제안기관에서 자유롭게 기술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시산방법, 자문 등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 기술
-

4.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수행조직



제안서의 표지(붙임3) 외에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실명가입을 금지함을 명시한다.

나. 연구원별 업무분장표

구분	역할분담내용	참여율(%)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갑)	◦ ◦	
연구보조원(1)	◦ ◦	
	공동연구자(갑,을, 병 등) 순으로 기술	

5. 연구기간(추진일정)

가. 소요기간 :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월)

나. 세부추진일정

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료 - 응용자료 ◦ 자료검토 ... ◦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진도(%)												

6. 기타

- 해당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제안할 사항, 기타 행정사항, 또는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제안서 작성방법 요약(예시)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2호>를 활용하여 표지를 작성한다. · 표지 외에는 참여연구원의 실명이 기입되지 않아야 한다. 	
I. 과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추진배경, 필요성, 연구범위 등 제안자의 연구과제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II. 제안 연구기관 현황		
1.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연구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개인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력사항) 	
2. 주요 연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를 기술한다. (개인일 경우 전공 및 연구 분야를 기술) 	
III. 제안 내용		
1. 제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연구방향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연구방향과 연구내용을 기술한다. 	
3.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시산방법, 자문 등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 기술 	
4.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연구원 규모 및 각 연구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한다.(연구원 실명기입 금지 : 갑, 을 등으로 기입) 	
5. 연구기간(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별 세부 추진일정과 목표 진척율을 기술한다.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제안할 사항, 기타 행정사항, 또는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과제수행계획서 서식(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접수년월일			※관리번호	
--------	--	--	-------	--

2019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과제수행계획서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하여 그 결과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통계청장 귀하

< 과 제 명 >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을 가감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또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I.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2. 관련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3. 기타 추가할 내용

II. 연구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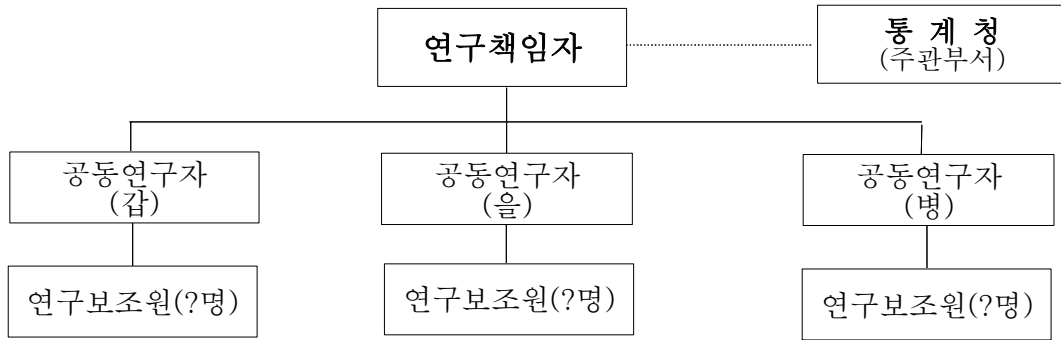
1. 연구범위
2. 연구대상 분석
- 3.

III. 과제수행계획

1. 사전연구 결과
2. 범죄통계 분류 방식 비교
3. 연계표 확정 방안
4. 시산 계획
5. 분류체계 도출 방안
6.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방안

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수행조직



☞ 제안서 및 제안발표회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참여 연구원의 축소는 불가 하지만, 계약금액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인한 경우는 협의 조정 가능함

나. 연구원별 업무분장표

구 분	소속	성명	역 할 분 담 내 용	참여율(%)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자			○ ○	
공동연구자			○ ○	
연구보조원			○ ○	

※ 연구용역 참여 연구진들의 참여율 관리를 위해 필히 작성

참여자 서약서

소 속	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홍길동	총 참여율		00.0%	
발주기관명	사업명	참여구분	참여율	용역 참여기간	
				참여일	종료일
통계청	0 0 0	책임연구원	25.0%	2019.1.1	2019.6.30.
000 부 (타 기관)	0 0 0 0 0	연구원	12.5%	2019.4.5.	2019.9.30.
000 청 (타 기관)	0 0 0 0 0	책임연구원	12.5%	2019.6.1.	2019.11.30.
		}			
		}			
합계			00.0%		

* 본 용역사업 계약기간 중에 참여하게 되는 타 사업을 모두 기재하고, 각 사업별 참여비율을 표시

본인은 본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사업을 포함한 전체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 홍길동 (서명)

8. 추진일정

가. 소요기간 :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월)

나. 세부추진일정

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추진진도(%)													

9. 추가 제안사항

☞ 제안요청서에는 없으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깊어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수행계획서에 포함시킨 사항